

**국도 59호선 연곡~현북 도로건설공사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2021. 02.



**국 토 교 통 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국도59호선 (광양~양양) 중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구간은 현재 1차로로서 폭원이 협소하고 구조가 열악한 구간을 신설 및 확장하여 왕복2차로로 시설개량하여 국도의 간선기능을 확보하고 도로 이용자의 교통편의 제공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2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1.2.1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별표2]에 의거 개발기본계획 중 도로의 건설에 해당되어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표 1-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2. 개발 기본계획 다. 도로의 건설	2)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의 건설공사 계획(별표 3 제5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 또는 제73조에 따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의 도로노선을 선정하는 때
계획노선	○ 총 사업연장 : 14.88km(신설 : 11.10km, 확장 : 3.78km) -1공구 : 신설 5.1km, 확장 2.38km -2공구 : 신설 6.0km, 확장 1.40km ○ 11.1km/4.0km+3.78km/10.0km ≒ 3.13 > 1.0(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	

1.2.2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별표3]에 의거 도로의 건설사업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표 1-2〉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5. 도로의 건설사업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신설과 확장을 함께 하는 경우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것 (신설구간 길이의 합/4km) + (확장구간 길이의 합/10km)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사업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사업연장 : 14.88km(신설 : 11.10km, 확장 : 3.78km) -1공구 : 신설 5.1km, 확장 2.38km -2공구 : 신설 6.0km, 확장 1.40km ○ 11.1km/4.0km+3.78km/10.0km ≒ 3.13 > 1.0(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 	

1.3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근거

- 본 계획의 평가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제24조에 근거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

〈표 1-3〉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p>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p> <p>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사업계획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토지이용구상안 3. 대안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p>② 행정기관 외의 자가 제안하여 수립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p>

〈표 1-3 계속〉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p>제24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p> <p>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p>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p>

1.4 계획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1.4.1 추진경위

- 2019. 06 : 국도59호선 연곡~현북 도로건설공사 설계용역 착수
- 2019. 07~10 : 현황조사 및 비교노선 검토
- 2019. 11 : 관계기관 협의 (강원도, 강릉시 등 24개 기관)
- 2020. 04 : 건설기술자문회의 (착수단계)
- 2020. 05 : 국도59호선 연곡~현북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용역 착수
- 2020. 11 : 평가준비서 작성 및 제출

1.4.2 향후계획

- 2021.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작성 및 제출
- 2021. : 주민의견 수렴 (설명회, 공람)
- 2021. :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작성 및 제출
- 2021.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 2021. : 환경영향평가(본안) 작성 및 제출
- 2022. : 국도59호선 연곡~현북 도로건설공사 착공(예정)

1.5 계획의 내용

가. 사업명 : 국도59호선 연곡~현북 도로건설공사

나. 위치

- 시점 :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 종점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다. 총연장 : 14.88km(1공구 7.48km, 2공구 7.40km), 2차로

라. 설계속도 : 60km/hr

마. 계획수립기관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바. 승인기관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사. 협의기관 : 원주지방환경청

아. 주요 사업내용

- 도로 구분

구분	일반도로	도로의 종류	비고
계획노선	지방지역 보조간선도로	국도	59호선

- 설계속도 : 60km/hr

- 주요 시설물 : 교량 11개소(418m), 터널 3개소(6,330m) (1안 기준)

구분	공구	명칭	연장(m)	형식	비고
교량	1공구	삼산1교	45.0	PSC거더	계곡수로, 신설
		삼산2교	60.0	ST.BOX	부연천, 신설
		삼산3교	80.0	ST.BOX	부연천, 신설
		삼산4교	15.0	RC라멘	계곡수로, 확장
	2공구	범수치1교	10.0	RC라멘	계곡수로, 신설
		범수치2교	10.0	RC라멘	계곡수로, 신설
		범수치3교	22.0	합성형 라멘	계곡수로, 신설
		고적치3교	32.0	합성형 라멘	계곡수로, 신설

국도59호선 연곡~현북 도로건설공사 평가항목 범위 등의 결정내용

구 분	공구	명 칭	연 장(m)	형 식	비 고
교 량	2공구	고적치4교	48.0	합성형 라멘	계곡수로, 신설
		어성전1교	52.0	합성형 라멘	어성전천, 신설
		어성전2교	44.0	합성형 라멘	어성전천, 신설
터 널	1공구	삼산터널	2,870	NATM	2차로 대면
	2공구	법수치1터널	920	NATM	2차로 대면
		법수치2터널	2,540	NATM	2차로 대면



(그림 1-1) 계획노선 위치도

제2장 대상지역 설정

2.1 대상지역 설정

- 「국도59호선 연곡~현북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용역」에 따른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은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변지역의 환경영향을 예측·평가하기 위해 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하였음

2.1.1 입지의 범위

- 계 획 명 : 국도59호선 연곡~현북 도로건설공사
- 계획구간
 - 시점 :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 종점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 도로제원 : 연장 14.88km, 2차로, 설계속도 60km/hr

2.1.2 주요항목별 평가대상 범위

- 주요 평가대상은 계획시행으로 인해 동·식물상, 지형·지질, 경관, 수환경, 대기질, 토양환경 등 변화 및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공사시 산지 등 편입에 따른 수목훼손, 토사유출에 의한 수질오염, 장비가동 등에 의한 비산먼지·소음 발생, 운영시 도로확포장공사에 따른 소음 발생, 도로 노면 유출수에 의한 수질오염 발생 등에 대한 영향이 예상되므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주요 항목별로 계획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상 지역을 설정하였음

2.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은 도로건설 계획에 따른 계획노선 주변에 대한 자연적 여건과 환경관련지구지역 지정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였음

〈표 2.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구 분	대 상 지 역	평가 대상 지역 설정 기준	
계획의 적정성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입 지 의 타 당 성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계획시행으로 인해 동·식물의 자연환경과 서식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계획시행으로 인한 지형·지질 변화 및 생태축 단절이 예상되는 지역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계획시행(교량, 터널 등)으로 인한 경관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수환경의 보전		○ 계획시행으로 인해 수환경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및 수계 (어성전천, 부연천 등)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계획시행으로 인한 대기질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계획시행으로 토양환경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시행으로 소음·진동 등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계획노선 및 지자체 환경기초시설 현황 및 장래 계획 검토
	자원·에너지순환의 효율성		○ 계획시행으로 온실가스 배출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에너지 사용 계획 검토 ○ 계획시행으로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및 지자체 처리계획 검토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수립계획이 사회·경제 환경과 조화 여부 검토

2.3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본 사업시행으로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예측분석하기 위하여 공사시와 운영시로 구분하여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였음

〈표 2.3-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항 목		구 분	평 가 대 상 범 위		평 가 대 상 지 역 설 정 기 준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대기 환경	기 상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2010~ 2019년	○ 속초기상대의 지난 10년간 기상자료를 분석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대기질 영향 예측 및 분석의 기초 자료로 이용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의 기상자료를 분석하여 대기질 영향 예측 및 분석의 기초자료로 이용	
	대기질	○ 사업노선 경계로부터 500m	공사시	○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2013.1.1, 환경부」를 참고하여 도로사업의 평가범위 설정 기준인 500m를 공사시 평가대상범위로 설정함	
	온실가스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및 운영시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의 온실가스로 인한 영향이 예상 되는 지역을 평가대상범위로 설정	
수 환경	수 질	○ 사업노선 및 주변수계 (여성전천, 부연천 등)	공사시 및 운영시	○ 공사중 강우시 토사 유입, 운영시 초기우수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하천을 공사시 및 운영시 평가대상범위로 설정함	
	수리수문	○ 사업노선 및 주변수계 (여성전천, 부연천 등)	공사시 및 운영시	○ 사업시행에 따른 유출량 변화에 따른 수위 변화가 예상되는 여성전천, 부연천 등 수계를 공사시 및 운영시 평가대상범위로 설정함	
토지 환경	토지이용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상의 변화가 예상 되는 지역을 평가대상범위로 설정함	
	토 양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 공사시 공사장비에 의한 폐유, 지장물 철거에 의한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을 평가대상 범위로 설정함	

〈표 2.3-1 계속〉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항 목		구 분	평 가 대 상 범 위		평 가 대 상 지 역 설 정 기 준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토지 환경	지형·지질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 공사시 절·성토에 따른 지형형상 및 지질 변화가 예상되는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을 평가대상범위로 설정함	
	동· 식물상	○ 사업노선 경계로부터 1km 기준	공사시 및 운영시	○ 사업시행으로 인해 동·식물상의 변화가 직접적으로 예상되는 계획노선과 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1km 이내 지역을 평가대상 범위로 설정함	
자연 생태 환경	자연환경 자 산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및 운영시	○ 사업시행으로 인해 자연환경자산에 영향이 예상되는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을 평가대상 범위로 설정함	
	친환경적 자원순환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 공사시 각종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 노선 및 주변지역을 평가대상범위로 설정함	
생활 환경	소음 진동	○ 사업노선 경계로부터 500m	공사시 및 운영시	○ 공사시 건설장비의 가동에 따라 인근 지역에 소음·진동 영향이 예상되므로 일반적인 장비투입대수에 따른 이격거리별 소음도를 참조하여 500m 이내 지역을 공사시 평가대상범위로 설정함 ○ 운영시 사업노선 인근 도로 이동차량 의해 주변 정온시설에 소음 영향이 예상되어 500m 이내의 지역을 운영시 평가대상범위로 설정함	
	경관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및 운영시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절·성토작업 및 구조물 설치로 경관 변화가 예상되는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을 평가대상범위로 설정함	
	인구·주거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및 운영시	○ 사업시행에 따른 유발인구 추정 및 인구·주거 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평가대상범위로 설정함	
사회 경제 환경	인구·주거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및 운영시	○ 사업시행에 따른 유발인구 추정 및 인구·주거 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평가대상범위로 설정함	



(그림 2-1)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설정도

제3장 대안의 설정

3.1 대안의 종류 및 선정

3.1.1 관련규정 검토

- 본 계획시행에 따른 대안 및 검토항목 등의 설정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2018-205호(2018.12.12)」,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17.12, 환경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설정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

- “대안”이라 함은 환경적 목표와 기준 유지를 전제로 행정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공법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변경한 결과를 말함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 아래 표의 범위 내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적정한 대안을 선정하여야 함
-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대안을 선정할 때는 행정계획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를 포함하여 2개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각 대안은 행정계획의 목적달성을 위해 실현가능하고 현실적이어야 함

〈표 3.1-1〉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

대안 종류	대안 선정방법	선정여부
계획비교	○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설정	선정
수단·방법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설정	-
수요·공급	○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설정	-
입 지	○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설정	선정
시기·순서	○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 순서(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설정	선정
기 타	○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

3.1.2 대안의 설정

가. 대안설정의 기본방향

- 본 계획의 대안설정은 상기 관련규정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계획의 특성 및 대안의 선정방법 등을 참고하여 설정함
- 따라서 본 계획의 경우 상기 대안 선정방법중 “계획비교” 및 “입지” 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음
 - 「계획비교」 측면에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No Action : 1안)와 사업계획을 수립했을 경우(Action : 2안)로 구분하여 설정하였음
 - 「입지」 측면에서 1공구 2가지, 2공구 3가지 비교 안을 설정하여 검토하였음
 - 「시기·순서」 측면에서 2가지 비교 안을 설정하여 검토하였음

나. 대안설정

- 설정된 대안은 계획비교, 입지 및 시기·순서에 관한 사항이며, 대안별 개요는 다음과 같음

<표 3.1-2> 대안별 개요

구 분	선정기준	내 용		
계획비교	계획수립 여부	1안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No Action)	
		2안	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 (Action)	
입지	대안별 노선 선정	1공구	1안	연곡소하천 횡단 배제 노선
			2안	연곡소하천 횡단 계획 노선
		2공구	1안	터널연장 증가 노선
			2안	터널연장 축소 노선
			3안	여성전마을 완전우회 노선
		시기·순서	계획의 시기·순서	1안
2안	향후 사업계획 수립시			

3.2 대안별 비교·검토

가. 계획비교

- 본 계획은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규정에 따른 도로의 건설공사 계획 수립으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No Action)와 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Action)에 대한 대안을 선정하였으며,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별 비교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3.2-1〉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별 검토결과

구 분	1안	2안
대안종류	계획 미수립시 (No Action)	계획 수립시 (Action)
내 용	○ 현재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	○ 개발행위로 인한 자연환경 변화 및 생활 여건 변화
장 점	○ 계획수립 및 개발에 따른 전반적인 환경 영향이 없어 자연환경적 측면으로는 유리할 것으로 판단	○ 통행차량의 교통사고 위험 감소 ○ 상위 관련 계획 실행 ○ 도로이용자의 교통편의 제공 ○ 지역균형 발전
단 점	○ 통행차량의 교통사고 위험 발생 ○ 주민이용 불편 초래	○ 계획시행에 따른 공사시 및 운영시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등의 환경적인 영향이 다소 발생할 것으로 예상
선정(안)	-	◎
<p>○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공사시 및 운영시 일부 환경영향이 예상되나 대상지역 여건에 맞는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이행토록하여 이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것임</p> <p>○ 지역간 연계를 강화하고 통행거리 및 시간을 단축하여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원활한 물류소통에 의한 지역 활성화에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됨</p>		

나. 입지

- 계획노선의 선형을 입지적인 측면에서의 대안으로 선정하여 비교·검토한 결과 1공구 및 2공구는 1안을 최종안으로 선정하였음

<표 3.2-2> 입지에 따른 대안 비교 검토결과(1공구)

구 분		1안	2안
개 요		○연곡소하천 횡단 배제 ○부연마을, 머구재구간 우회노선 계획	○연곡소하천 횡단 계획 ○부연마을, 머구재구간 기존노선
연 장		○ L = 7.480 km	○ L = 7.360 km
주 요 공사량	깎 기	13만m ³	19만m ³
	쌓 기	10만m ³	7만m ³
	토 공	사토 29만m ³	사토 35만m ³
	교 량	4개소/200m	5개소/368m
	터 널	1개소/2,870m	1개소/2,655m
추 정 사업비		1,134억원	1,212억원
기술적측면		○최대 종단경사 S=6%로 평지부 설계기준 만족 ○백두대간완충구역 통과구간 구조물 미설치 ○하천 유심부 교각 배제	○최대 종단경사 S=8%로 산지부 설계기준 만족 ○백두대간완충구역 통과구간 성토 및 절토부 옹벽설치 ○하천 유심부 교각 저축
환경적측면		○백두대간완충구역 저축구간 L = 20m ○생태자연도 1등급구간 저축 최소 (머구재구간:5,024m ²) ○생태기능공간 저축 ○오대산국립공원 구역 근접통과	○백두대간완충구역 저축구간 L = 210m ○생태자연도 1등급구간저축 과다 (머구재구간:8,308m ²) ○생태기능공간 미저축 ○오대산국립공원 구역 이격통과
사회적측면		○시점부 가옥, 펜션, 민박 등 5동 저축 ○머구재구간 공사중 기존도로 통행 유리	○시점부 성모요양원 근접통과 ○머구재구간 공사중 기존도로 통행 불리
검토의견		○2안은 백두대간 완충구역 저축구간 옹벽구조물 설치 필요, 삼산4교 하천 유심부 교각 저축, 종단경사 산지부 설계기준 적용, 생태 1등급 저축 과다, 성모요양원 근접통과 및 머구재구간 공사중 통행 불리로 집단민원이 예상됨 ○생태·자연도 1등급 구간 저축 및 백두대간 완충구역 통과를 최소화하는 1안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선정(안)		◎	-

〈표 3.2-3〉 입지에 따른 대안 비교 검토결과(2공구)

구 분		1안	2안	3안
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자연도 1등급지 최저 저촉 →환경훼손 최소화 ○ 터널연장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자연도 1등급지 저촉 →환경훼손 최소화 ○ 터널연장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성전마을 완전우회 →생태·자연도 1등급 내부통과
주 요 공사량	깎 기	15.0만m ³	26.0만m ³	20.7만m ³
	쌓 기	7.0만m ³	12.4만m ³	8.0만m ³
	토 공	사토 40.0만m ³	사토 41.8만m ³	사토 43.6만m ³
	교 량	7개소/218m	9개소/323m	5개소/122m
	터 널	2개소/3,530m	2개소/3,150m	2개소/3,450m
추 정 사업비		1,293억원	1,320억원	1,411억원
기술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곡선반경 토공 Rmin=180 터널 Rmin=700~1,000 ○ 최대종단경사 토공 S=8.0%, 터널 S=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곡선반경 토공 Rmin=140 터널 : 직선 ○ 최대종단경사 토공 S=8.0%, 터널 S=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곡선반경 토공 Rmin=140 터널 Rmin=700(입구) ○ 최대종단경사 토공 S=8.0%, 터널 S=3.0%
환경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자연도1등급 저촉 → 2,500m²미만 양호 ○ 최대절취고 H=20.0m(편측) ○ 산지훼손면적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자연도1등급 저촉 → 7,000m²이상 협의곤란 ○ 최대절취고 H=51.0m미만 ○ 계곡부 수로이설 2개소 ○ 산지훼손면적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자연도1등급 저촉 →20,000m²이상 협의곤란 ○ 최대절취고 H=40.0m ○ 계곡부 수로이설 없음 ○ 산지훼손면적 과다증가
사회적 측면		<p><어성전 마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옥 5동 저촉 (폐가2동 포함) ○ 당초 59호선 시설계 노선 ○ 민원 : 주민 절충안 	<p><어성전 마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옥 7동 저촉 (폐가2동 포함) ○ 민원 : 1안과 동일 	<p><어성전 마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옥 7동, 펜션 2동 저촉 (폐가2동 포함) ○ 민원 : 주민 일부요구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안은 어성전마을을 완전우회하는 노선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안이지만 생태·자연도 1등급 내부를 통과하며 가장 많이 저촉하는 노선으로 환경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 ○ 2안은 터널 길이가 축소, 교량·옹벽 등 구조물 증가로 대규모 절토, 고성토, 수로이설 등 환경 훼손과다 발생으로 환경적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됨 ○ 1안은 2, 3안 보다 생태·자연도 1등급 저촉이 적으며 터널길이 증가로 환경훼손이 최소화 되는 노선으로 가장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선정(안)		◎	-	-

다. 시기순서

- 계획 시행시기를 1안(금회 계획수립시)와 향후 2안(계획수립시)로 구분한 안을 비교·검토하였으며, 1안(금회 계획수립시)을 최종안으로 선정하였음

<표 3.2-4> 시기순서에 따른 대안 비교 검토결과

구 분	1안	2안
시 기	○ 금회 계획 수립시	○ 향후 계획수립시
장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행속도 일관성 측면에서 본 구간의 사업계획 수립시 안전성제고 및 도로 연결성을 확보 ○ 기존도로 단순확장 및 선형불량구간 개량으로 도로 안전성 확보 ○ 지역 민원을 반영하여 단절된 도로연결을 통한 접근성 개선과 주변 관광지 활성화 및 지역간 균형 발전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계획 수립시까지 자연환경 및 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발생하지 않음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시행으로 지형의 변화, 소음·진동, 생태·자연도 1등급 훼손 등 환경 영향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노선 일부구간 단절로 지역간 이동이 어렵고 협소한 기존도로를 이용하고 있어 통행 불편 등 민원해소 불가 ○ 선형불량구간의 지속적 사고 발생 유발
선 정	◎	
선정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수립의 시기 및 순서 측면에서 금회 계획수립시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 등에 다소 영향이 있으나, 노선 개량 및 신설로 안전성 확보 및 주민의 도로 이용의 불편 등 민원을 해소, 국지도의 간선기능 조기확보가 가능함 	

제4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4.1 전략환경영향평가

4.1.1 평가항목의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시 환경영향 분석을 위하여 계획으로 인해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소를 검토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중점평가 항목으로 설정하였음

〈표 4.1-1〉 평가 항목 선정사유 및 선정결과

구 분	선정결과	선정사유	
계획의 적정성	중점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대안설정·분석 검토	
입지의 타당성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중점	○ 자연환경자산 등 각종 보호지역에 영향예상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동·식물 서식지 및 다양성 변화 예상 ○ 각종 보호종 영향 검토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중점	○ 백두대간 및 주요 정맥 등 지형·지질 변화 예상, 생태축 단절 검토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중점	○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 변화 예상
	수환경의 보전	중점	○ 계획노선 및 주변수계 현황 조사 및 계획시행으로 인한 주변 수계 영향예상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중점	○ 대기질, 토양, 소음·진동 등 현황 조사 ○ 대기질 변화, 토양오염 유발요인 검토 및 소음·진동 등 영향 예상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일반	○ 환경기초시설 현황 파악 및 처리가능여부 검토
	자원·에너지순환의 효율성	중점	○ 폐기물 발생량 및 자원활용계획 검토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에너지 사용계획 검토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중점	○ 토지이용 변화 예상	

4.1.2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가. 평가 항목별 조사예측 방법

- 조사는 기존자료를 활용하되, 현지조사 및 탐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
- 영향예측은 보전대상 등 조사시 파악된 환경현황을 바탕으로 계획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정도를 정량적으로 분석
- 영향예측 결과에 따라 환경보전방안 수립

〈표 4.1-2〉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예측방법

구 분		조사 계획	예측 및 평가 방법
계획의 적정성		① 조사내용 : 상위 및 관련계획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 관련 상위계획과 연계성 및 관련 계획과의 조화성 검토, 대안 계획의 적정성 검토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① 조사내용 : 육상 및 육수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자료(광역)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 계획노선 경계로부터 1km 기준	○ 자료 및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동·식물 및 서식환경을 조사하고 동·식물상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 ○ 계획시행에 따른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 예측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① 조사내용 : 지형 형상, 지질 상황, 백두대간보호지역 현황, 보전 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등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의 영향 유무 검토 ○ 계획시행에 따른 지형변화 및 생태축 단절영향 검토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① 조사내용 : 주변 경관 현황 및 경관 자원 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 변화 검토 (근경, 중경, 원경) ○ 보전가치가 있는 경관자원 영향 여부 검토
	수환경의 보전	① 조사내용 : 지표 및 지하수질 현황, 오염원 현황 등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인근 수계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 지표수질 : 3지점 × 1회 - 지하수질 : 5지점 × 1회	○ 계획노선 및 주변수계 현황 조사 ○ 계획시행으로 인한 주변 수계 수질변화 검토

〈표 4.1-2 계속〉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예측방법

구 분		조사 계획	예측 및 평가 방법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 기준 부합성	대기질	① 조사내용 : 대기질 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 5지점 × 1회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대기질 현황 파악 및 계획시행시 대기질 영향 검토
		토양	① 조사내용 : 토양 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 7지점 × 1회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토양오염 현황 파악 및 계획시행시 토양오염 유발요인 검토
		소음·진동	① 조사내용 : 소음·진동 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 5지점 × 1회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소음·진동 현황 파악 및 계획시행시 소음·진동 영향 검토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① 조사내용 : 환경기초시설 현황 및 장래계획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환경기초시설 현황 파악 및 주변 오염원 처리계획 검토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① 조사내용 :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온실가스 배출현황 등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 폐기물 발생 검토 및 자원 활용 계획 검토 ○ 온실가스 배출 변화 예측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에너지 사용계획 등 검토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인구·주거	① 조사내용 : 인구 및 주거 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 계획시행으로 인한 인구·주거 변화 검토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① 조사내용 : 용도별,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 계획시행으로 인한 토지이용변화 검토	

나. 조사지점 및 선정 사유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환경 현황을 파악하고,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계획노선 및 주변에 분포하는 주거지역, 시설물 등을 조사지점으로 선정하였(〈표 4.2-6〉, 〈그림 4.2-1〉 참조)

4.2 환경영향평가

4.2.1 평가항목의 설정

가. 환경영향요소 추출

- 평가항목을 설정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토대로 공사시와 운영시를 구분하여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소를 추출하였음

〈표 4.2-1〉 환경영향요소 추출

구분	공사시		운영시	
환경영향요소	○도로 노선공사	○지형변형, 수목의 벌채, 깎기 및 쌓기, 굴착 및 발파, 토지점용	○시설물 이용	○도로, 교량, 배수로, 통로 등
	○건설자재	○골재, 석재의 확보 및 운반, 건설기자재 운반 및 가동, 토사이동	○차량통행	○배기가스 발생, 소음발생
	○시설공사	○교량 공사, 배수 및 통로박스 공사, 터널 공사, 포장 공사, 공사인부 투입	-	-

나. 환경영향요소와 평가항목간 행렬식 대조표

-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방법은 Leopold가 고안한 행렬식 대조표 방식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음
- 환경영향요소와 평가항목간의 상호평가는 상호관련성 크기를 부호와 숫자를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써 부호와 숫자 6단계로 구분하여 표시하였으며, 앞에서 추출된 환경영향요소와 평가항목들의 상호 관련성과 크기를 행렬식 대조표로 작성하였음

〈표 4.2-2〉 행렬식 대조표 등급설정기준

등급	영향 또는 관련성의 내용	등급	영향 또는 관련성의 내용
●	개발되면 상당히 좋다.	△	악영향은 있으나 미약하다.
■	개발되면 비교적 긍정적이다.	□	악영향이 다소 있다.
▲	개발되면 긍정적이거나 크기는 작다.	○	악영향이 크다.

〈표 4.2-3〉 평가항목과 환경영향요소와의 관계

		환경항목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기상	대기질	온실가스	수질	수리·수문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친환경적자원순환	소음·진동	경관	
공사시	도로 노선 공사	수목의 별채			□						○	□			□	
		지형변형					□				○	□	□			□
		깎기 및 쌓기					□				○					
		굴착 및 발파									□					○
		토지점용							□			□	□			
		교량공사					□									□
		공사인부투입													△	
	건설 자재	골재·석재의 확보 및 운반														□
		건설장비 가동		□	□										△	□
운영시	차량 통행	도로 및 교량				△		●								△
		배기가스 발생		○	□											
		소음 발생														○
		야간 불빛									□					

주 : ● 개발되면 상당히 좋다. △ 악영향은 있으나 미약하다.
 ■ 개발되면 비교적 긍정적이다. □ 악영향이 다소 있다.(보통정도)
 ▲ 개발되면 긍정적이거나 크기가 작다. ○ 악영향이 크다.

다. 평가항목의 설정

1) 평가대상 항목 설정

- 본 사업시행에 따른 평가항목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 2018-205호), 2018.12.12,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스코핑 가이드라인 (평가항목·범위 결정 등을 위한 지침서), 2011.12, 환경부」에 준하여 설정하였음
- 기상, 대기질, 온실가스, 수질, 수리·수문,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 자산,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경관, 인구·주거 등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을 중점평가항목으로 선정하였음
- 기상, 자연환경자산, 인구·주거 등 기초 자료로 활용하거나 지역특성 파악 및 비교적 영향이 적은 항목은 일반평가항목으로 선정하였음
- 그 외 본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악취, 해양환경, 위락, 위생·공중보건, 전과장해, 일조장해, 산업 등 항목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하였고, 각 항목별 선정사유는 다음 표와 같음

〈표 4.2-4〉 평가항목 선정(제외) 사유

분 야	항 목	선정 결과			선정사유
		중점	일반	제외	
대기 환경	기상	-	○	-	○ 대기질 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대기질	○	-	-	○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 및 공사장비 연료사용으로 인한 오염물질발생, 운영시 계획노선 차량통행으로 인한 오염물질 발생 등의 영향이 예상됨
	악취	-	-	○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에 악취유발시설이 위치하지 않으므로 평가항목에서 제외함
	온실가스	○	-	-	○ 공사시 투입장비 및 운영시 이동차량 증가 및 에너지이용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이 예상됨
수 환경	수질	○	-	-	○ 공사시 강우로 인한 토사유출 및 공사인부 투입에 의한 오수 발생, 운영시 비점오염물질 발생 등이 예상됨
	수리·수문	○	-	-	○ 사업시행으로 인한 연곡천, 부연천 등 홍수위 및 홍수량 등 수리·수문 변화를 검토하기 위함
	해양환경	-	-	○	○ 사업노선은 해양지역에 위치하지 않으므로 평가항목에서 제외함

〈표 4.2-4 계속〉 평가항목 선정(제외) 사유

분 야	항 목	선정 결과			사 유
		중점	일반	제외	
토지 환경	토지이용	○	-	-	○ 사업시행 전·후의 토지이용상의 변화가 예상됨
	토양	○	-	-	○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에 따른 폐유발생, 지장물 철거에 따른 토양오염 영향 등이 예상됨
	지형·지질	○	-	-	○ 절·성토에 의한 지형 변화 및 토사유출, 비옥토 유실, 사면발생 등이 예상됨
자연 생태 환경	동·식물상	○	-	-	○ 사업시행으로 인한 식물상 및 동물상의 변화가 예상됨
	자연환경자산	-	○	-	○ 자료조사를 통한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자연환경자산의 현황 파악 및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여부 검토
생활 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	-	-	○ 공사시·운영시 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등 처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함
	소음·진동	○	-	-	○ 공사시 장비 가동, 발파 등에 의한 소음 영향 및 운영시 교통 소음 영향이 예상됨
	위락	-	-	○	○ 도로 계획으로 위락 변화 영향 및 상관성이 적어 제외함
	경관	○	-	-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의 경관요소를 파악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를 예측하기 위함
	위생· 공중보건	-	-	○	○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1의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평가항목에서 제외함
	전파장해	-	-	○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에 전파장해 유발요인 없음
	일조장해	-	-	○	○ 사업시행으로 인한 일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사회 경제 환경	인구·주거	-	○	-	○ 사업시행에 따른 유발인구 추정 및 인구·주거 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함
	산업	-	-	○	○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있으나 정량적 평가가 어려움

4.2.2 평가항목의 설정

가. 항목별 조사예측 방법

- 본 사업의 평가항목별 조사·예측 방법은 다음 표와 같음
 - 조사는 기존자료를 활용하되, 현지조사 및 탐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
 - 예측은 보전대상 등 조사시 파악된 사업대상지의 환경현황을 바탕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정도를 정량적으로 분석
 - 영향예측 결과에 따라 저감방안을 수립

〈표 4.2-5〉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예측 방법

평가항목	조사 계획	영향예측 방법
동·식물상	① 조사내용 : 육상동·식물상 및 육수동·식물상 ② 조사범위 : 사업노선 및 경계로부터 1km 기준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 사업노선(경계) 1km × 3회	○ 사업시행으로 주변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 예측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결과 참조
자연환경 자산	① 조사내용 : 자연환경자산 분포현황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경계로부터 1km 기준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 사업시행으로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파악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결과 참조
기 상	① 조사내용 : 사업노선 주변 기상현황 ② 조사범위 : 사업노선과 인접한 영월기상대 ③ 조사방법 : 관련 기상관측자료	○ 기상연보 자료 분석·정리
대기질	① 조사내용 : 주변 대기오염 발생원 및 대기영향 예상시설 분포현황, 대기질 현황 ② 조사범위 : 사업노선 및 경계로부터 약 500m ③ 조사방법 : 기존자료 및 현지 조사 ④ 조사지점 : 5지점 × 3회	○ 토공량 및 장비운영에 따른 비산 먼지, NOx 항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사업노선 인근 통행 차량에 의한 영향 예측 - 공사시 : AERMOD 확산모델 이용 - 운영시 : CALINE-3
온실가스	① 조사내용 : 사업노선 인근 온실가스 배출시설 및 에너지이용시설 현황파악 ② 조사범위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기존자료 조사	○ 온실가스 배출원단위를 통한 공사시 및 운영시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
수 질	① 조사내용 : 지표·지하수질 현황, 수질관련 환경 기초시설 현황 등 ② 조사범위 : 사업노선 및 주변수계 (어성전천, 부연천 등) ③ 조사방법 : 기존자료 및 현지 조사 ④ 조사지점 - 지표수질 : 3지점 × 3회 - 지하수질 : 5지점 × 3회	○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하여 주변 수계(어성전천, 부연천 등)에 미치는 영향 예측 - 합리식 이용 ○ 공사인부에 의한 오수 발생량 산정 - 원단위법 이용 ○ 운영시 비점오염물질 영향예측

〈표 4.2-5 계속〉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예측 방법

평가항목	현 황 조 사	영향예측 방법
수리·수문	① 조사내용 : 홍수현황 및 배수체계 조사 ② 조사범위 : 사업노선 및 주변수계 (어성전천, 부연천 등) ③ 조사방법 : 기존 관측·통계자료 활용	○ 사업시행에 따른 계획노선 인근 수계의 수리·수문 변화 검토 - 본 계획관련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 참조
토지이용	① 조사내용 : 용도별,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지장물 분포 현황 ② 조사범위 : 사업노선 ③ 조사방법 :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	○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 예측 - 본 사업관련 개발계획서 참조
토양	① 조사내용 : 토양오염유발시설 현황, 토양오염도 현황 ② 조사범위 : 사업노선 ③ 조사방법 :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 7지점 × 3회	○ 토양오염 개연성 여부 및 사업시행에 따른 공사시 및 운영시 토양오염 영향 검토 - 기존자료 및 현지 측정 결과 참조
지형·지질	① 조사내용 : 지형·지질 현황,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특이지형·지질 분포 현황 등 ② 조사범위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 절·성토에 의한 지형 변화, 토사 유출, 비옥토 유출, 사면발생, 사면 안정성 등 - 문헌자료 및 본 계획관련 지반조사 보고서 등 참조
친환경적 자원순환	① 조사내용 :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② 조사범위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기존 원단위 자료 조사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등 처리대책 - 원단위법 이용
소음·진동	① 조사내용 : 주변 발생 소음원 및 주요 정온 시설 분포현황 ② 조사범위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 5지점 × 3회	○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에 의한 소음·진동 영향 예측 - 합성소음도 산출식 및 점음원 거리감쇠식 이용 ○ 운영시 계획지구 인근 및 내부 도로 등에 의한 소음 영향 예측 - 교통소음예측식 이용
경관	① 조사내용 : 경관 현황 ② 조사범위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 예측 - 지형도 및 인공위성사진 분석, 경관시뮬레이션
인구·주거	① 조사내용 : 인구현황 파악 및 장래 인구 변화예측 ② 조사범위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통계연보)	○ 사업시행에 따른 유입인구 예측 및 영향 검토 - 문헌자료 및 본 사업관련 개발계획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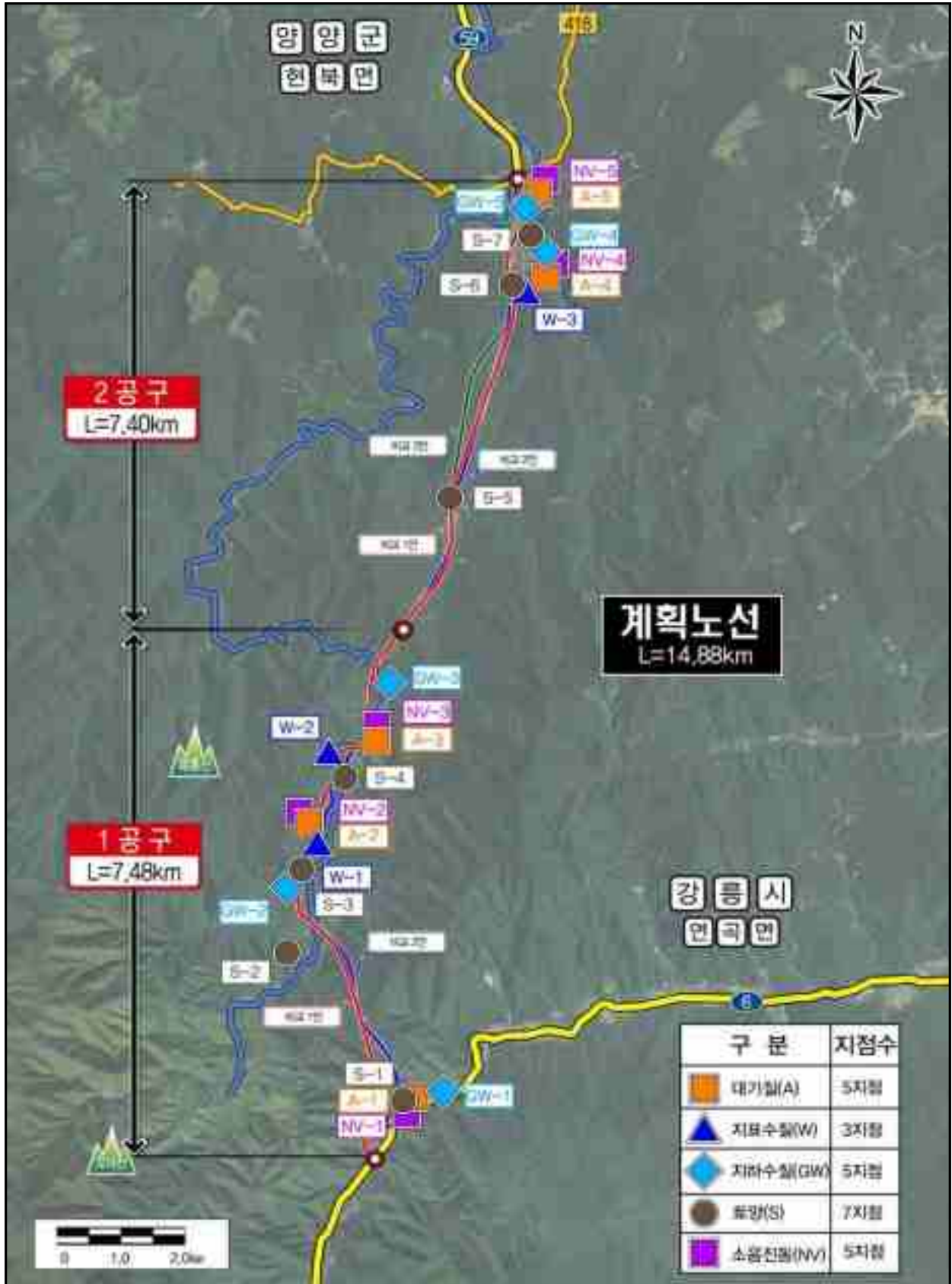
나. 조사지점 및 선정 사유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환경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계획지구 및 주변에 분포하는 주거지역, 시설물 등을 측정지점을 선정하였음

〈표 4.2-6〉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조사 항목별 조사지점

구 분	조사지점명	조사지점 위치	비 고
대기질	A - 1	강원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1075-3	주거지
	A - 2	강원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1273-2	주거지
	A - 3	강원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1453-45	주거지
	A - 4	강원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153-7	주거지
	A - 5	강원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530	현성초등학교
지표수질	W - 1	강원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1459	부연천
	W - 2	강원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1453	부연천
	W - 3	강원 양양시 현북면 어성전리 132-8	어성전천
지하수질	GW - 1	강원 강릉시 연곡면 진고개로 710-7	생활용수
	GW - 2	강원 강릉시 연곡면 부연동길 701	생활용수
	GW - 3	강원 양양군 현북면 부연동길 1459-71	생활용수
	GW - 4	강원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길 261-83	생활용수
	GW - 5	강원 양양군 현북면 남대천로 1670-8	생활용수
토양	S - 1	강원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1146-2	-
	S - 2	강원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1248	-
	S - 3	강원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1283	-
	S - 4	강원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1318-2	-
	S - 5	강원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산 136-1	-
	S - 6	강원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121-3	-
	S - 7	강원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335-1	-
소음·진동	NV - 1	강원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1091-1	주거지
	NV - 2	강원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1273-2	주거지
	NV - 3	강원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1453-45	주거지
	NV - 4	강원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153-7	주거지
	NV - 5	강원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530	현성초등학교

주) 측정지점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그림 4.2-1)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조사지점도

제5장 약식평가 절차 신청 여부

5.2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법 제51조(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약식절차 대상사업의 범위)에 의거하여 약식평가절차 대상사업은 대상사업의 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최소규모의 200% 이하인 사업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사업을 말함
- 본 계획은 「도로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으로 신설과 확장을 함께 하는 경우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치의 합이 약 2.7로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최소규모의 200%인 2이상으로 나타나 약식평가절차 대상규모에 해당되지 않으며, 계획노선 일부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포함될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5조에 의거한 약식절차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표 5-1> 약식절차 해당 여부

약식절차 대상사업 법적근거	금회사업 해당여부
1. 대상사업의 규모가 별표 3에 따른 <u>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최소 규모의 200% 이하인 사업</u> 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사업	○ 신설구간 길이의 합/4km + 확장구간 길이의 합/10km(1 이상)의 200% 이상 ※ 사업규모 신설구간 길이(11.1km)/4km + 확장구간 길이(3.78km)/10km ≒ 3.13
2. 사업지역에 <u>환경적·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u>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	○ 환경적·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일부 포함
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u>생태·자연도 1등급권역</u>	-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 포함
나.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u>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u>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u>자연공원</u>	- 해당사항 없음
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33조에 따른 <u>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보호구역</u>	- 야생생물보호구역 계획노선 약 8.5km 이격
마.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에 따른 <u>보호구역</u>	- 계획노선 약 8.7km 이격
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u>수변구역</u>	- 해당사항 없음
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u>수변구역</u>	- 해당사항 없음
아.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u>수변구역</u>	- 해당사항 없음
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u>수변구역</u>	- 해당사항 없음

제6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6.1 전략환경영향평가

6.1.1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

가. 결정내용 공개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 공개 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 이상(2021.02.17. ~ 2021.03.02)
- 공개 방법 : 원주지방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olit.go.kr/wrocm>),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 공개 내용 :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나. 주민 의견 반영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반영

6.1.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의견 수렴

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관계기관 의견 수렴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한 후 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원주지방국토관리청), 승인기관(원주지방국토관리청), 협의기관(원주지방환경청) 및 대상지역(강원도지사, 강릉시장, 양양군수 등)으로부터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공고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 공고 주체 :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 공고 시기 : 초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
- 공고 신문 :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과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 공고 내용
 -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의 제출시기 및 방법
- 공고 및 공람내용 게시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 공고 및 공람 내용,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공고 및 공람 내용,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공람 기간 : 20일 이상 40일 이내(공휴일 제외)
- 공람 장소 : 어성전리 복지회관, 연곡복지회관 등(세부 공람장소 추후 협의)

다.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1) 설명회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 설명회 개최 주체 :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 설명회 시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기간 내 실시
- 설명회 장소 : 어성전리 복지회관, 연곡복지회관(세부 설명회장소 추후 협의)
- 설명회 실시 공고 : 설명회 개최 7일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 및 공람 사항에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음

2) 공청회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 공청회 개최 요건
 -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라. 주민의견 수렴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
- 의견 제출 기한 : 공람기간 시작된 날부터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
- 제출 의견 :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계획의 수립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환경보전방안 및 공청회 개최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

마.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7조
-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

구 분	비 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해당 없음
○ 「자연공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해당 없음
○ 「습지보전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해당 없음
○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해당 없음
○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른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지역	해당

바.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4항 및 시행령 제19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여부를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

6.2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평가 대상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주민에 대한 공고 및 공람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여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 절차 수행시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제5항 조건을 충족할 경우 환경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계획임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제5항

-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제14조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협의 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보다 사업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보다 사업규모가 제22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최소 사업규모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
 4. 폐기물소각시설, 폐기물매립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의 입지가 추가되지 아니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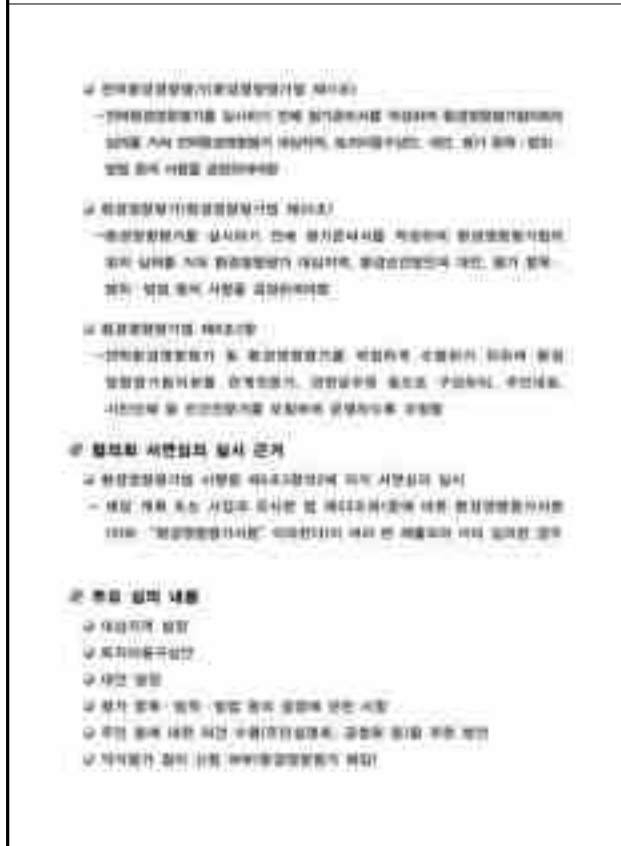
제7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7.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 본 계획수립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였음
- 주관부서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 심의방법 : 서면 심의
- 심의기간 : 2020년 12월 11일 ~ 2021년 01월 25일
- 평가항목·범위결정 : 2021년 02월 02일
- 심의 내용 : 국도59호선 연곡~현북 도로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 위원구성 : 총 10명
- 심의위원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1	위원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과 장	김 ○ ○	의견없음
2	위 원	원주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과 장	김 ○ ○	-
3	위 원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팀 장	박 ○ ○	의견없음
4	위 원	(주)경동엔지니어링	전 무	김 ○ ○	-
5	위 원	한림성심대학교	교 수	김 ○ ○	-
6	위 원	강릉시 경제환경국 환경과	과 장	김 ○ ○	-
7	위 원	양양군 환경과	과 장	이 ○ ○	-
8	위 원	강릉시 삼산3리	위 원	강 ○ ○	-
9	위 원	양양군 어성전1리	이 장	김 ○ ○	-
10	위 원	야생생물관리협회 강원도지부 사무국	국 장	권 ○ ○	의견없음


7.2 환경영향평가 협의개최 알림




<p>2. 환경영향평가범위와 실적 계획</p> <p>2.1 환경영향평가범위(구분)</p> <p>가. 환경영 -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도로계획(국도)</p> <p>나. 구·별·지방</p> <table border="1" data-bbox="226 488 743 884"> <thead> <tr> <th>구·별</th> <th>구분</th> <th>영향지역</th> <th>영향지역</th> </tr> </thead> <tbody> <tr> <td>국도</td> <td>구</td> <td>연곡~현북(국도59호선) 도로건설공사</td> <td></td> </tr> <tr> <td rowspan="9">구·별</td> <td>구</td> <td>연곡~현북(지방도) 도로건설공사</td> <td></td> </tr> <tr> <td>구</td> <td>연곡~현북(지방도) 도로건설공사</td> <td></td> </tr> <tr> <td>구</td> <td>연곡~현북(지방도) 도로건설공사</td> <td></td> </tr> <tr> <td>구</td> <td>연곡~현북(지방도) 도로건설공사</td> <td></td> </tr> <tr> <td>구</td> <td>연곡~현북(지방도) 도로건설공사</td> <td></td> </tr> <tr> <td>구</td> <td>연곡~현북(지방도) 도로건설공사</td> <td></td> </tr> <tr> <td>구</td> <td>연곡~현북(지방도) 도로건설공사</td> <td></td> </tr> <tr> <td>구</td> <td>연곡~현북(지방도) 도로건설공사</td> <td></td> </tr> <tr> <td>구</td> <td>연곡~현북(지방도) 도로건설공사</td> <td></td> </tr> </tbody> </table> <p>2.2 실적 계획 (서면실적)</p> <p>가. 국도(국도 59호선, 국도 59호선, 국도 59호선)</p> <p>나. 지방도(지방도 200호, 지방도 200호, 지방도 200호 등 지방도 계획 실적)</p> <p>→ 환경영(지방자치단체)의 도로계획(국도), 지방도(지방도)의 도로계획</p>	구·별	구분	영향지역	영향지역	국도	구	연곡~현북(국도59호선) 도로건설공사		구·별	구	연곡~현북(지방도) 도로건설공사		구	연곡~현북(지방도) 도로건설공사		구	연곡~현북(지방도) 도로건설공사		구	연곡~현북(지방도) 도로건설공사		구	연곡~현북(지방도) 도로건설공사		구	연곡~현북(지방도) 도로건설공사		구	연곡~현북(지방도) 도로건설공사		구	연곡~현북(지방도) 도로건설공사		구	연곡~현북(지방도) 도로건설공사		<p>2.3 실적 계획 (현장실적)</p> <p>2.3.1 실적 계획 (현장실적)</p> <p>2.3.2 실적 계획 (현장실적)</p> <p>2.3.3 실적 계획 (현장실적)</p> <p>2.3.4 실적 계획 (현장실적)</p> <p>2.3.5 실적 계획 (현장실적)</p> <p>2.3.6 실적 계획 (현장실적)</p> <p>2.3.7 실적 계획 (현장실적)</p> <p>2.3.8 실적 계획 (현장실적)</p> <p>2.3.9 실적 계획 (현장실적)</p> <p>2.3.10 실적 계획 (현장실적)</p> <p>2.3.11 실적 계획 (현장실적)</p> <p>2.3.12 실적 계획 (현장실적)</p> <p>2.3.13 실적 계획 (현장실적)</p> <p>2.3.14 실적 계획 (현장실적)</p> <p>2.3.15 실적 계획 (현장실적)</p> <p>2.3.16 실적 계획 (현장실적)</p> <p>2.3.17 실적 계획 (현장실적)</p> <p>2.3.18 실적 계획 (현장실적)</p> <p>2.3.19 실적 계획 (현장실적)</p> <p>2.3.20 실적 계획 (현장실적)</p> <p>2.3.21 실적 계획 (현장실적)</p> <p>2.3.22 실적 계획 (현장실적)</p> <p>2.3.23 실적 계획 (현장실적)</p> <p>2.3.24 실적 계획 (현장실적)</p> <p>2.3.25 실적 계획 (현장실적)</p> <p>2.3.26 실적 계획 (현장실적)</p> <p>2.3.27 실적 계획 (현장실적)</p> <p>2.3.28 실적 계획 (현장실적)</p> <p>2.3.29 실적 계획 (현장실적)</p> <p>2.3.30 실적 계획 (현장실적)</p> <p>2.3.31 실적 계획 (현장실적)</p> <p>2.3.32 실적 계획 (현장실적)</p> <p>2.3.33 실적 계획 (현장실적)</p> <p>2.3.34 실적 계획 (현장실적)</p> <p>2.3.35 실적 계획 (현장실적)</p> <p>2.3.36 실적 계획 (현장실적)</p> <p>2.3.37 실적 계획 (현장실적)</p> <p>2.3.38 실적 계획 (현장실적)</p> <p>2.3.39 실적 계획 (현장실적)</p> <p>2.3.40 실적 계획 (현장실적)</p> <p>2.3.41 실적 계획 (현장실적)</p> <p>2.3.42 실적 계획 (현장실적)</p> <p>2.3.43 실적 계획 (현장실적)</p> <p>2.3.44 실적 계획 (현장실적)</p> <p>2.3.45 실적 계획 (현장실적)</p> <p>2.3.46 실적 계획 (현장실적)</p> <p>2.3.47 실적 계획 (현장실적)</p> <p>2.3.48 실적 계획 (현장실적)</p> <p>2.3.49 실적 계획 (현장실적)</p> <p>2.3.50 실적 계획 (현장실적)</p>
구·별	구분	영향지역	영향지역																																		
국도	구	연곡~현북(국도59호선) 도로건설공사																																			
구·별	구	연곡~현북(지방도) 도로건설공사																																			
	구	연곡~현북(지방도) 도로건설공사																																			
	구	연곡~현북(지방도) 도로건설공사																																			
	구	연곡~현북(지방도) 도로건설공사																																			
	구	연곡~현북(지방도) 도로건설공사																																			
	구	연곡~현북(지방도) 도로건설공사																																			
	구	연곡~현북(지방도) 도로건설공사																																			
	구	연곡~현북(지방도) 도로건설공사																																			
	구	연곡~현북(지방도) 도로건설공사																																			
<p>-</p>	<p>-</p>																																				

7.2 평가항목·범위 결정 알림

국민의 나라 환경보호를 위한 우리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국토교통부


수신 국토59호선 영국-형북 도로건설공사 전차 및 환경영향평가용역 책임기술원
(경유)
제목: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결정 결과 알림(영국-형북)

1. 수경 제2020-4570(2020.12.17)의 관행입니다.

2. 우리 청에서 시행중인 '국토59호선 영국-형북 도로건설공사 전차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개최하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결과를 불양자 같이 보내드리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환경영향평가협의 심의의결서 1식(열순), 공.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주무관: 사무관대우 조영재(국과상) 전화: 033-209-212

참조자:

시청: 도로계획과-582 (2021. 2. 23) 송수

주: 26490 강원도 원주시 인경로 60(반곡동)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 / <http://www.mol.go.kr/wr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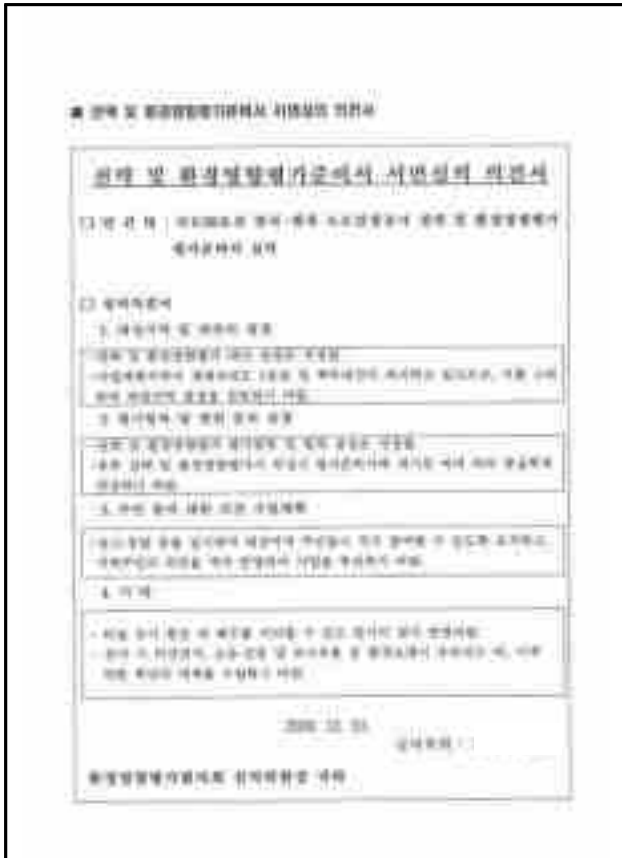
전화번호: 033-799-2810 팩스번호: 033-742-9507 / hyl128@mol.go.kr / 지문계(5)

발의리가 순장어로 복귀합니다.

7.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p>원주시방환경청 김○○-1</p>	<p>원주시방환경청 김○○-2</p>
<p>원주시방환경청 김○○-3</p>	<p>(주)경동엔지니어링 김○○</p>

<p>전략 및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시민심의 의견서</p> <p>□ 한 권역 : 과수 800원 및 과수-농작 품목인물물과 적하 및 환경영향 평가 평가준비서 심의.</p> <p>□ 중요사항</p> <p>□ 과수 800원 및 과수-농작 품목인물물과 적하 및 환경영향 평가 평가준비서 심의</p> <p>□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시민심의 의견서</p> <p>□ 한 권역 : 과수 800원 및 과수-농작 품목인물물과 적하 및 환경영향 평가 평가준비서 심의.</p>	<p>중요사항, 환경영향 평가준비서 시민심의 의견서 심의. 과수 800원 및 과수-농작 품목인물물과 적하 및 환경영향 평가 평가준비서 심의.</p> <p>□ 한 권역 : 과수 800원 및 과수-농작 품목인물물과 적하 및 환경영향 평가 평가준비서 심의.</p> <p>□ 중요사항</p> <p>□ 과수 800원 및 과수-농작 품목인물물과 적하 및 환경영향 평가 평가준비서 심의</p> <p>□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시민심의 의견서</p> <p>□ 한 권역 : 과수 800원 및 과수-농작 품목인물물과 적하 및 환경영향 평가 평가준비서 심의.</p>
<p>한림성심대학교 김〇〇-1</p>	<p>한림성심대학교 김〇〇-2</p>
<p>한림성심대학교 김〇〇-3</p>	<p>한림성심대학교 김〇〇-4</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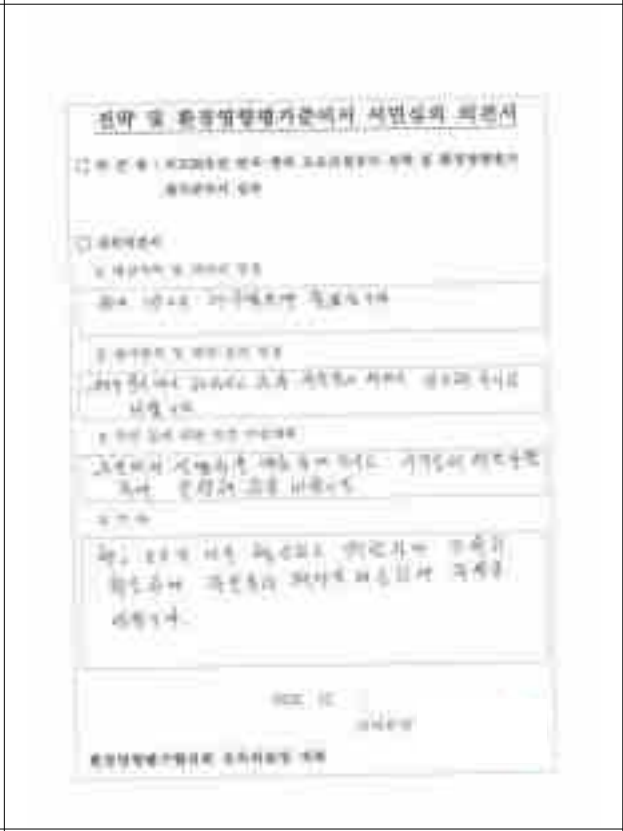
강릉시 경제환경국 김○○



양양군 환경과 이○○-1



양양군 환경과 이○○-2



강릉시 삼산3리 강○○

<p style="text-align: center;">양양·북·중앙경관개발사업에 대한 심의결과 의견서</p> <p>11 양양군, 국고지원권, 양양 철도 노선보통주요 시설 및 중앙경관개발사업 평가위원회 심의</p> <p>12 심의의견서</p> <p>4. 대상지역 및 개발계획 설명 ① 기존 자연 경관(11리) 및 ② 행정구역 및 행정 구역 설명 (본문 참조) (본문 참조) (본문 참조) (본문 참조) (본문 참조) (본문 참조) (본문 참조) (본문 참조) (본문 참조) (본문 참조) (본문 참조) (본문 참조) (본문 참조) (본문 참조) (본문 참조) (본문 참조) (본문 참조) (본문 참조) (본문 참조) (본문 참조) (본문 참조) (본문 참조) (본문 참조) (본문 참조) (본문 참조) (본문 참조) (본문 참조) (본문 참조) (본문 참조) (본문 참조) (본문 참조) (본문 참조) (본문 참조) (본문 참조) (본문 참조) (본문 참조) (본문 참조) (본문 참조) (본문 참조) (본문 참조) (본문 참조) (본문 참조) (본문 참조) (본문 참조) (본문 참조)</p> <p style="text-align: right;">양양군 양양군청 기획관리팀</p> <p style="text-align: left;">양양군청 기획관리팀</p>	
<p style="text-align: center;">양양군 여성전1리 김○○</p>	